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전경주 | 북한대학원대학교 | jhonus78@gmail.com

북한은 최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고[1] 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하였다.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발표한 예산 수입 증가율은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의 0.9%로,[2]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국가 예산 수입 항목 구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과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북한에서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국가 예산 수입 항목별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본다. 자료는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 『로동신문』, 2021년 4월 9일부.
2) 이종규, 「북한의 재정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p.49.

Ⅰ. 국가 예산 납부 의무단위

북한은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29조에서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정운영 자금을 조세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1972년에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는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라고 명시하여 세금 제도 폐지를 공식화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양한 국가 예산[3] 수입 항목을 만들어놓고 국정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북한의 기관・기업은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며 물질적 부가 창조되어 자체 수입이 있는 생산 단위인 독립채산제 기관과 자체적인 수입원 없이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받아 쓰는(경비 예산이라고도 함[4]) 비생산 단위인 예산제 단위로 구분된다.[5] 국가 예산 납부는 생산 단위인 독립채산제 기관・기업에서만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국가 예산 수입법 제11조에는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 수입 계획, 원가계획, 순소득 또는 소득계획, 리윤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 돈 자리 번호 같은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6]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기업소란 일정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진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소에는 인민 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 운수, 봉사 단위 같은 것이 속한다.[7]

Ⅱ. 국가 예산 수입 항목의 구성

북한 국가 예산 수입법 제2조에는 “국가 예산 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리익금, 협동단체 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 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밝혀져 있다.

---

3) 「재정법」, 제9조 “국가 예산은 전반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이다”라고 밝혀져 있다.
4) 원성돈, 「경비예산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3호, 1997, p.36.
5)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36호, p.5.
6) 「국가 예산 수입법」, 제11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7) 「기업소법」, 제2조(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 보충).

1. 거래수입금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국가 예산 납부 의무가 법적인 것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제기되게 된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본다. 하지만 폴 모어(미국의 경제학자)는 생산의 3요소가 재료(things), 사람(men), 아이디어(idea)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의 3요소에 관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다.[8)]

북한에서는 생산의 3요소가 노동력, 노동수단(고정재산), 노동대상(유동 재산)으로 구성된다.[9)] 즉, 사람과 기계, 자재가 투입되어 생산이 진행된다. 여기서 기계와 자재는 생산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켜 생산물의 판매에 따라 감가상가금과 자재비의 형태로 보상된다.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자기가 노동에 참가한 데 대한 보상을 받는 데 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노동이 생활비(V)의 형태로 보상받는다. 하지만 노동수단이 국유화 되어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일하게 된다. 사람이 사회를 위한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순소득(M)이 창조되게 되며 이때 국가를 위하여 일한 노동의 부분은 거래수입금의 형태로 납부되고, 기업을 위하여 일한 노동의 부분은 국가기업리익금의 형태로 국가 수중에 납부되게 된다.[10)]

전충혁(2018)은 "경공업 기업소들에서 조성된 소득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생산물 부분과 사회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조성된 생산물 부분이 포함되여 있다. (중략)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생산물 부분은 사회주의적 로동보수 공간을 통하여 생활비, 상금, 장려금 형태로 개별적 근로자에게 분배되며 개인소득을 이룬다. 사회를 위한 로동에 의하여 조성된 생산물 부분은 사회 순소득의 형태를 취하면서 거래수입금이나 국가기업리익금 등을 통하여 국가의 수중에 동원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체 충당 몫으로 기업소에 남는다."[11)]라고 하였는데 이는 경공업 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은 과거 노동과 산 노동으로도 구분된다. 과거 노동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생산 과정에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이미 지출되어 대상화되어있는 사람의 노동이며, 산 노동은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물질적 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하는 사람의 활동이다. 과거 노동과 산 노동의 결합, 즉 노동의 체현과 창조로 새로운 물질적 부가 창조된다.[12)]

---

8) https://www.etnews.com/201101260026?m=1
9) 『광명백과사전 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p.280.
10) 최준택, 『사회주의기업소재정 (2판)』, pp.80~120.
11) 전충혁, 「경공업기업소소득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59권 4호, 2013, p.113.

〈표 1〉 국영 생산기업소 가격체계와 판매 수입의 경제적 내용

과거 노동		산 노동			
이전된 가치 (소모된 생산수단)		자기를 위한 생산물 가치	새로 창조된 가치 (사회를 위한 생산물 가치)		
C		V	M(사회 순소득)		
원가			기업 순소득(리윤)		중앙집중적 순소득
① 자재비	② 감가상각금	③ 생활비	④ 국가기업리익금	⑤ 자체 충당금	⑥ 거래수입금

자료: 최준택, 『사회주의기업소재정 (2판)』, p.100.

위에서 논의된 사회를 위한 노동 중 국가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부분, 즉 중앙집중적 순소득 부분인 거래수입금은 국가 예산 수입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이다.

거래수입금은 "일정한 비률로 가격에 고정되어 생산물이 실현되는 데 따라 국가 예산에 바치게 되는 사회 순소득의 한 부분"[13]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로 기업은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소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14] 기업체들의 경영활동 평가는 중앙 지표의 현물 지표별 계획 수행 정형과 국가 납부 수행 정형, 실리 보장 정형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15] 거래수입금은 국가 납부 수행 정형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이다. 거래수입금은 납부 비율에 따라 내며 판매수입금이 조성될 때마다 내게 된다.[16]

2. 국가기업리익금

국가기업리익금은 "사회주의 국영기업소, 기관들에서 조성된 리윤을 분배하여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형태"[17]이다. 국가기업리익금은 사회를 위한 노동 중 기업소를 위한 노동의 부분으로 기업의 이윤에서 분배되어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서 예산 수입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국가기업리익금은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에서 조성된 이윤에서 자체로 쓰게 된 몫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재정적 공간이다. 고일동[18]은 국가기업리익금을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로 보았고 박준호(2019)는 "국가기업리익금은 기업소의 순소득을 기초로 부과되나, 법인세와 달리 정해진 세율이 없으며 기업소 순소득 중 유보소득을 제외한 잔여

12) 최준택, 『사회주의기업소재정 (2판)』, pp.80~120.
13)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14) 「기업소법」, 제31조(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 보충).
15) 렴병호,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의 리용」, 『경제연구』, 2호, 2019, p.17.
16) 「국가 예산 수입법」, 제21~24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17)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30.
18) 고일동, 『북한의 예산구조와 최근의 재정실태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9, p.23.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측면에서[19] 자본주의 국가나 체제 이행 국가에서의 법인세와는 큰 차이가 있다."[20]라고 하였다.

국가기업리익금과 거래수입금은 2002년 7.1 조치로 국가기업이득금으로 통합되었다가 2011년 「국가 예산 수입법」에서 조문화되는 방식으로 다시 제정되었다.

국가기업리익금은 사회 순소득의 분류 형태라는 의미에서는 거래수입금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일련의 차이점도 있다.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가격 속에 일정한 크기로 고착되어 생산물이 실현되는 즉시 국가 예산에 납부되나, 국가기업리익금은 그 기업에 조성되는 이윤과 자체 충당 몫의 규모에 의존한다. 거래수입금의 부과 단위는 국영기업 및 생산협동조합이지만, 국가기업리익금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영기업들만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업리익금 규모는 기업들에서 조성된 이윤 중 기업에 남겨놓고 쓰기로 한 자금과 지방유지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규정한다. 국가기업리익금 납부는 경상 납부와 확정 납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경상 납부는 매일 판매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건별로 계산하여 내는 제도(경상납부하는 국가기업리익금 = 판매 수입 × 국가기업리익금 납부비율[21])이다. 경상 납부 제도는 결산에 의한 실적이윤이 나오지 않은 조건에서도 실적이윤에 근사한 국가기업리익금이 조성되는 즉시 국가 예산에 집중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납부이다. 그러나 경상 납부액은 실적이윤에 의한 납부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것은 월말에 다시 확정 납부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편차 액을 조절하여 월, 분기, 연간 단위로 내게 된다.[22]

3. 협동단체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은 협동단체에서 조성된 이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23]으로 협동단체 기업들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협동단체 기업은 생산수단을 주로 국가로부터 공급받으며 협동단체 기업들은 사회 순소득의 일부를 협동단체리익금의 형태로 국가에 바친다.

협동단체리익금은 협동적 소유의 생산협동조합과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들에서 낸다. 생산협동조합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후 조직된 형태로서 생산수단과 자금을

---

19) 박준호의 논문에서는 국가기업 리익금을 직접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영/국유기업의 배당금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 주식회사 제도하에서의 회사의 배당 재원 중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립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 전부는 주주의 배당가능이익이며, 국영/국유기업의 100% 주주가 정부라는 점을 감안한다. 이때 잔여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권한을 주주인 정부가 갖는다고 보면 자본주의 국가하에서의 국영기업 또한 법인세와 배당금으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윤상납제'나 북한의 '국가기업 리익금'과 큰 차이는 없다. 단순히 당기순이익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만으로는 국가기업 리익금의 잔여 이익 환수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20) 박준호, 『경제위기 이후 북한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 2』,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 논문, 2020, p.34.
21) 『재정금융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5, p.130.
22) 『재정금융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5, pp.130~131.
23) 「국가 예산 수입법」, 제25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산활동만 하며 분배도 일한 데 따라 실시하는 조합 형태이다. 편의협동조합은 국가 소유의 건물, 국가자금, 국가보장용 편의 자재를 가지고, 또는 개별적 성원들이 자기의 소도구, 기구를 협동조합에 가지고 들어와 편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조합 형태이다. 수산협동조합은 배와 어구를 비롯한 생산수단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며 수산물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해 그에 따르는 분배를 받는 조합 형태이다.

협동단체리익금도 국가기업리익금과 같이 경상 납부와 확정 납부의 단계를 거치는데,[24] 해당 예산소속에 따라 지방예산에 납부하게 된다.

4. 봉사료수입금

봉사료수입금은 봉사료에 들어있는 순수입 일부를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25]이다. 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들의 순수입은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를 던 나머지로서 중앙집중적 순수입의 몫과 기업 순수입의 몫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앙집중적 순수입의 몫은 봉사료수입금이며 기업 순수입의 몫은 이윤이다. 봉사료수입금의 원천은 봉사 기관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요금에 의하여 조성되는 순수입 일부이다. 봉사료수입금은 업종에 따라 운수(화물운임, 여객 운임, 국제 화물 수송 운임, 빌려준 운수 수단 사용료, 항과 갑문 통과 요금 수입, 항과 부두 작업 요금 수입 등), 체신(우편통신 수입, 전신통신 수입, 시내와 시외 통신 요금 수입, 유선과 무선 방송 요금 수입, 이동통신 수입, 국제통신 수입 등), 급양(음식물 판매 수입), 편의(편의 봉사 요금 수입, 부속품 판매 수입), 도시경영(사용료 수입, 위탁수수 요금 수입, 도시미화 수입, 원림부문 수입, 시설물 봉사 수입, 수송 수입), 정보산업부문(프로그램 수입) 기업[26]들과 관개관리소(관개 사용료수입), 인공 수정소(인공수정료 수입) 등 농업 부문에 봉사하는 기업들에 적용[27]된다. 봉사료수입금의 규모는 업종별 봉사요금에 대한 적용 비율에 따라 규정된다.

지방 예산법 제28조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 공급과 사회 급양, 편의 봉사사업을 개선하고 봉사료 수입을 늘려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면서 지방예산 수입을 늘려야 한다. 지방예산 수입에서 봉사료수입금의 비중은 20~30% 이상 되어야 한다."[28]라고 하였는데, 이는 봉사료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 확보를 증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24) 「국가 예산 수입법」, 제25-30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25) 「국가 예산 수입법」, 제20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26) 「회계결산서 작성 지도서」, 평양 재정성, 2004. 5, pp.10~13.
27) 「회계결산서 작성 지도서」, 평양 재정성, 2004. 5, p.6.
28) 「지방 예산법」, 제28조, 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7호로 채택.

5. 감가상각금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 원가에 포함해 회수하는 자금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국가투자로 마련된 생산적 고정재산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재산은 건물, 구축물, 전도 장치, 기계설비, 공구와 기구, 비품, 종자 집짐승, 부림 집짐승, 나무, 기술문건 및 도서로 구분되며 그 세부적 구분은 〈표 2〉와 같다.

감가상각금은 오직 생산적 고정재산에 대해서만 내며, 이를 내지 않는 고정재산은 비생산적 고정재산과 자체 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 고정재산 그리고 감가상각금을 바치지 않기로 한 고정재산[29]이다. 즉, 예산제 기관, 기업의 재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와 같이 영구적인 성격이거나 재생산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축이나 폐기 처분을 통해서 투자금액 회수가 가능한 재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30]

감가상각금은 국가가 기투자한 고정재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형태로 기업에 부과된다. 이것이 생산물의 원가에 포함되어 생산물 판매 수입으로 보상되며, 그 형성 및 적립과 보상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로 인해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국가 예산에 다시 동원되게 된다.

〈표 2〉 고정재산의 용도와 특성에 따른 구분

구분	세부 항목
건물	생산용 건물, 비생산용 건물
구축물	지하구조물, 관개 및 강 하천 구조물, 상하수도구축물, 운수 시설물, 저장 및 적재 구축물, 문화시설물, 난방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
전도 장치	송배전 선로, 통신 및 방송선로, 상하 수도관, 열난방관, 각종 수송관, 오수 및 우수관 등
기계설비	보이라 및 원동기, 전기설비, 광신 및 탄광 설비, 야금, 금속절삭, 단조 및 제과, 펌프와 공작기계, 화학, 건재, 목재 가공, 종이생산, 식료품 가공, 농업, 건설, 운수, 권양, 통신 및 방송, 영화, 제약, 계산 및 사무용 실험 및 측정계기 등
소공기구	일반공구, 측정기구, 실험기구, 소농기구, 각종 기구 등 다만 절삭공구, 목형기구, 형타, 기구 등은 고정재산에 속하지 않음
집짐승	부림 짐승, 꿀벌, 관상용 동물 등 단, 새끼동물, 후보 집짐승, 살찌우기 동물은 고정재산에 속하지 않음
나무	과일나무, 호두나무, 뽕나무, 록화용나무 등 경제림, 유지림, 관상용 나무와 가로수 등
기술문건 및 도서	신문, 잡지, 그림책을 제외한 기업소가 사들인 도서와 과학기술 문건, 설계문건 등
비품	생산용 비품과 사무 및 경리용 비품

자료: 백관석, 「고정재산 감가상각의 대상을 규정하는 요인」, 『경제연구』, 2호, 1991, p.48.

29) 「국가 예산 수입법」, 제34-35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30) 장창규, 「고정재산 감가상각과 그 조직」, 『경제연구』, 1호, 1994, p.35.

감가상각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31]한다.

감가상각금 총액 = 고정재산의 시초 가격 + 내용 연한 기간의 대보수비 총액 – 철거비를 초과하는 잔존물의 가격

감가상각금을 적립하는 방법에는 정액 상각법과 비례 상각법이 있다. 정액 상각법은 감가상각금 총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누어 매해 평균적으로 감가상각을 시행하는 방법이며, 비례 상각법은 감가상각금 총액을 고정재산 내용 연한 기간의 예상 생산량이나 작업량 또는 작업시간 수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6. 부동산사용료

"부동산사용료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한 대가로 기관, 기업체, 개인이 국가에 무는 돈"[32]이며 농업 토지사용료, 부지사용료, 건물사용료, 증식장 사용료, 어장 사용료, 도로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33] 허철환(2016)은 부동산사용료 제정 목적에 대해 "화폐 공간을 통하여 부동산의 개발 이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농업 토지를 마구 개발하여 건설물을 짓고 채굴 채광조건이 좋고 품위가 높은 광석만 골라가면서 채취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나라의 산림을 마구 파괴하는 현상, 불필요하게 공장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34]라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 대상은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이며 예산제 기관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동구(2006)는 독채기업들인 경우 이용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용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기준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제 기관인 경우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받아 다시 예산에 내도록 하는 것은 복잡성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합당하지 않으며, 기준 초과 부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사용료 기준 예산을 할당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35]

부동산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정하며 국가 부지 기준을 매개 기업에 정해주고 그것을 초과하면 부지사용료를 높게 정하는 방법으로 적용[36]된다.

농업 토지사용료는 토지 부류별, 지목("토지의 지목은 논, 밭, 과수밭, 뽕밭, 나무모밭,

---

31)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30.
32) 허철환, 「부동산에 대한 재정적 관리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62권 3호, 2016, p.124.
33) 「국가 예산 수입법」, 제40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34) 허철환, 「부동산에 대한 재정적 관리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62권 3호, 2016, p.124.
35)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 『경제연구』, 4호, 2006, p.32.
36)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 『경제연구』, 4호, 2006, p.32.

갈밭, 밤나무밭, 호두나무밭 등으로 하고 토지의 등급은 농업과학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며 등급곁수는 등급에 따르는 수확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7])별, 등급별로 정해진 토지가격에 해당 토지사용료 납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김광일(2017) 은 농업 토지사용료는 현지 답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동산 조사대상의 자연 지리적 위치와 상태,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협동농장별로, 국영농장별로, 기관, 기업의 부업지별로 한 해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였다.[38])

부지사용료는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관, 기업, 협동단체에 등록된 부지(기관, 기업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지와 울타리를 포함한 총면적과 보호구역 면적)와 개인소유 주택 용지에 적용한다. 부지사용료는 부류별, 등급별, 용도별 부지가격에 단위당 사용료 납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건물사용료의 적용대상은 기관, 기업, 개인이 생산 및 봉사에 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가투자로 마련된 건물이며, 건물의 시초 가격에 해당 부동산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증식장 사용료는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데 이용되는 증식장과 양어장, 서식장에 적용하며, 총면적에 사용료 기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어장 사용료는 등록된 종류별 배척 수에 배척당 어장 사용료 기준을 곱하여 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도로 사용료는 독립채산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차종별 자동차 대수와 대당 사용료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차장 사용료는 자동차나 자전거를 주차하는 규정된 장소에 적용한다.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관, 기업은 기업 순소득[39])을 통해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며, 이는 필요 이상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바치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7.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납부 의무자는 종업원이며, 원천은 생활비이다. 종업원은 월 노동보수의 1%를 노동보수자금을 받는 날에 공제하여 내야 한다. 2008년의 「국가 예산

---

37) 허철환, 「부동산가격제정의 원리와 방법」,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38) 김광일, 「대한 통계조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63권 4호, 2017, p.114.
39) 허철환, 「감가상각금과 부동산사용료의 경제적 내용과 그 리용의 필요성」,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43권 1호, 2011, pp.102~103;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 『경제연구』, 4호, 2006, p.32.

수입법」 2차 개정에서는 종전에 종업원이 부담하던 사회보험료를 기업과 협동단체들에서도 내도록 하였는데, 납부 비율은 월 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하였다.[40]

8. 재산 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금

재산 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금은 국가 소유재산의 판매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 없이 조성된 가격 편차 수입금, 대외경제 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41]이다.

재산 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에는 국가 재산 판매 수입, 가격 편차 수입, 무역 기관 수입, 무상 협조 물자 판매 수입 등이 포함된다. 재산 판매수입금은 기관, 기업들에서 국가 소유재산 판매 결과에 조성된 화폐 수입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자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은 자체 자금으로 적립[42]). 가격 편차 수입은 사회 순소득의 재분배 형태로서 기업의 경영활동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식량 가격 편차 수입, 량정 기관 량곡 가격 편차 수입, 물자 가격 편차 수입 등이 있다. 무역기관 수입금은 무역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가격 편차 수입(수출품의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과의 차, 수입품의 수입 가격과 국내 실현 가격과의 차로 인한 수입)과 차관 및 연불수입, 합영 합작, 외국투자기업 수입 등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무상 협조 물자 판매 수입금은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재외인사들이 무상으로 보내온 협조 및 기증 물자에 대한 판매 수입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43]

9. 기타수입금

기타수입금은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 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으로서, 무상노력 동원수입금, 국가 수수료, 벌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개인 수입금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 수입금은 시장활동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내는 것으로 시장사용료("시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44])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해당 문헌에서는 "지역시장

40) 「국가 예산 수입법」, 제47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41) 「국가 예산 수입법」, 제49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42) 「국가 예산 수입법」, 제50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43) 「국가 예산 수입법」, 제49~54조(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44) 『주체 정치경제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4. p.296.

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시장관리소의 담당 밑에 조직 운영되므로 시장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득을 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45]

45) 『주체 정치경제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4. p.296.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가. 단행본

『광명백과사전 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p.280.
『주체 정치경제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2004.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최준택, 『사회주의기업소 재정』,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8.
「회계결산서 작성 지도서」, 평양 재정성, 2004. 5, pp.10~13.

나. 논문

김광일, 「부동산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63권 4호, 2017, p.114.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 『경제연구』, 4호, 2006, p.32.
백관석, 「고정재산 감가상각의 대상을 규정하는 요인」, 『경제연구』, 2호, 1991년.
원성돈, 「경비예산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3호, 1997, p.36.
장창규, 「고정재산 감가상각과 그 조직」, 『경제연구』, 1호, 1994, p.35.
전충혁, 「경공업기업소 소득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59권 4호, 2013, p.113.
허철환, 「부동산에 대한 재정적 관리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62권 3호, 2016, p.124.
허철환, 「부동산가격제정의 원리와 방법」,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허철환, 「감가상각금과 부동산사용료의 경제적 내용과 그 리용의 필요성」,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43권 1호, 2011, pp.102~103.

다. 기타

『로동신문』, 2021년 4월 9일부.

「국가 예산 수입법」, (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 보충).
「기업소법」, (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 보충).
「지방 예산법」, 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7호로 채택.
「재정법」, 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 보충.

2. 국내 문헌

가. 단행본

고일동, 『북한의 예산구조와 최근의 재정실태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9, p.23.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36호, p.5.
손희두・문성민, 『북한의 재정 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7.
양문수・이석기・이영훈・임강택・조봉현,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산업연구원, 2012.
이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5월호, pp.3~26.
이종규, 「북한의 재정충격, 경제적 영향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호, p.49.
최유・김지영, 『북한의 재정 법제에 관한 연구 2』,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9.
헌재 1990. 9. 3. 89헌가95 참조.

나. 논문

박준호, 『경제위기 이후 북한 재정 제도에 대한 연구 2』, (북학대학원 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20), p.34.
최정욱, 『북한 세금 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학대학원 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20).

다. 기타

https://www.etnews.com/201101260026?m=1(검색일 2021년 4월 11일).